

# 최신 판례 예규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규소득-1087, 2022.01.20

## 질 의

- 질의인은 독일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 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국내 거주자의 지위에서 연금 명목의 금원(이하 "쟁점금원")을 '22년부터 수령할 예정임

질의

- 국제연합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연금의 과세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외에서 국제연합 산하 기관에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제1호 거주자의 지위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735, 2021.12.29

## 질 의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 해운항만사업자의 자산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

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질의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은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반영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 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 개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법규법인-4605, 2022.01.20

## 질 의

- 동업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동업자(거주자, 내국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 및 관련 세액의 동업자별 납부 방법
-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회 신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갑법인, 갑법인의 동업자는 내국법인 A와 거주자 B로 구성)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인 동업자 A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내국법인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A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A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갑법인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법인세법」 제55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A의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A에게 배분하고, A는 해당 금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갑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 B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B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하고, B는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07, 2021.12.30

### 질 의

- (질의1)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기부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건설업자가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하는 쟁점사업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 회 신

사업자(이하 "A법인")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A법인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건설업자가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